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이 병 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지급의 예외, 지급일수의 계산,
지급의 제한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증인등에 지급되는 비용을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규정하고
둘째, 비용지급의 예외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청원인,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세째, 증인등에 지급되는 비용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며,

네째,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함을 규정하고
다섯째,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